

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

1. 공사개요

가. 공 사 명 :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-1 국유건물 해체공사

나. 과업내용 : 관계도서 등 공고문 상 첨부파일 참조

다. 현장위치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-1 위 3개동

라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일(해체계획서 검토 등 준비기간 포함)

※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

마. 공사내용 : 건축물 해체공사 후 부지 정리

※ 해체신고 완료,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진행 중

바. 계약조건 : 당 공고문, 관련도서, 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 조건(조달청 준용)에 따름

사. 추정금액 : 금146,41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(추정가격 133,100,000원, 부가가치세 13,310,000원)

2. 계약방법 : 전자입찰, 소액수의, 지역제한(전남광주통합특별시), 청렴서약제

3. 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 07. 23.(목) 16:30 ~ 2026. 07. 29.(수) 16:30

4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07. 29.(수) 17:30,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

※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5. 견적서 제출방법

가.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.

※ 전자입찰시스템 『보낸 문서함』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다.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'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퇴직 공제 부금비'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료	국민연금보험료	노인장기요양보험료	산업안전보건관리비	퇴직 공제 부금비
2,001,561	2,644,622	263,005	2,205,600	1,280,553

- 라.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
- 마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, 관련 서류 제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바.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확인서, 사용내역서,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,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
6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- 가.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‘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’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]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**본점 소재지**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)를 계속하여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**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.
- 나.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.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(문의 : 조달청콜센터 ☎ 1588-0800)

7. 공동계약 : 불허

8.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

- 가.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같음하며,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(☎ 051-794-483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해체계획서, 설계도서, 허가서류 등 각종 관련서류 검토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.**

9.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

- 가.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.

10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

- 가.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$\pm 2\%$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나.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,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「적격심사기준」에서 정한 **낙찰하한율(89.745%)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**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「정부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라. 소액수의 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마.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11. 견적서 제출의 무효

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44조, 「정부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(입찰무효의 범위) 및 「공사입찰유의서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, 「공사입찰특별유의서」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.

12. 청렴계약서 제출

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3. 보충정보 제공처

- 가. 입찰안내 및 상담, 입찰참가자격등록 :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(1588-0800)
- 나. 입찰(견적)공고, 개찰, 계약 등 :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(051-794-4838)
- 다.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“입찰정보-공사-기초금액”과 “개찰결과”에 게재됩니다.
- 라.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“e-고객센터법령정보”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“정보제공-법령정보”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14. 기타사항

- 가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,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.
- 나.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,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, (계약예규) 공사입찰유의서, 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조건,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」 및 관계법규 등 포함)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라.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.
- 마. **관련법령에 따라 '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 대상일 경우,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**

< (계약예규) 공사계약일반조건 >

제43조의3(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)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노무비 청구내역(근로자 개인별 성명, 임금 및 연락처 등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**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**(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18.>

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(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**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**하여야 하며,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(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(지)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※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「클린신고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으니, 계약 업무와 관련한 금품, 상품권, 선물,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우 편 : (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(BIFC)

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

◇ 인터넷 :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kamco.or.kr>) -> 국민참여 ->클린신고

2026. 07. 23.

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

